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인권센터), 02-970-9008

제정 2019. 10. 31.

개정 2020. 4.20.

개정 2021. 10. 21.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인권"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제10조,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에서 보장하 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  - 가. (삭제 2021. 10. 21.)
  - 나. (삭제 2021. 10. 21.)
- 2. "성희롱"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.
  - 가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·정신적·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
  - 나.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연구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  - 다.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라. (삭제 2021, 10, 21,)

- 3. "성폭력"이란 「형법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.
- 4. (삭제 2021. 10. 21)
- 5. "인권침해 등"이란 성희롱, 성폭력, 그 밖의 인권침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.
  - 가. 평등권 침해의 차별 및 언어적·정신적·물리적 폭력 행위
  - 나. 성별을 이유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
- 6. "신고인"이란 인권침해 등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- 7. "피신고인" 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.
- 8. "피해자"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.
- 9. "가해자"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.
- 10. "당사자"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 및 피신고인을 말한다.
- 11. "참고인"이란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 등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2. "관계부서"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- 13. "다양성"이란 성별, 국적 및 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 조건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이 공존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말한다.
- 14. "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"이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학문생태계와 건강한 대학 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  - 가.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집단(다양성에 의하여 구분 되는 집단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말한다)에 대하여 교육, 임용, 승진 및 복지 등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활동
  - 나. 대학 생활 및 대학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

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.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, 사안에 따라 인권센터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2장 조직 및 기능

- 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인권상담팀, 성평등상담팀을 둔다.
  - ② 센터에는 상담, 사건 접수, 조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팀장, 상담원 및 직원 등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고, 상담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- 제5조(센터장과 부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인권센터 부센터장(이하 "부센터장"이라 한다)을 각각 둔다.
  -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,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③ 부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,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인권상담팀의 기능) 인권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성희롱・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, 상담 및 조사
  - 2.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처리 요청 및 조사 결과 보고
  - 3.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응급처치
  - 4.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
  - 5. 그 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7조(성평등상담팀의 기능) 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, 상담 및 조사
  - 2.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처리 요청 및 조사 결과 보고
  - 3.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응급처치
  - 4.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
  - 5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실시
  - 6. 그 밖에 성희롱 ·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8조(고충처리 업무 지원)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권침해 등 관련 상담 및

-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신규로 임명된 직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충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센터장은 직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위원회

제9조(위원회 종류) 센터에 운영위원회, 심의위원회, 다양성위원회를 둔다.

#### 제1절 운영위원회

- 제10조(운영위원회 설치) 총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제11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3명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부센터장, 일반대학원장, 교무처장,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④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2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센터 운영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센터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
  - 3. 센터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
  -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13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2절 심의위원회

- 제14조(심의위원회 설치) 총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- 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심의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부센터장, 교무부처장,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- ③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대학원 소속 교원, 직원 및 학생 각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  - 2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관련 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
  - 3.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4.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  -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⑥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6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 - 2. 인권침해 등 피해 여부의 결정·조정·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인권침해 등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
  - 4.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- 5. 그 밖에 인권침해 등에 관한 중요사항

- 제17조(위원 등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장,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(이하 "위원 등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든 업무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
  - 2.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 - 3.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 였던 경우
  - ②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.
  - ③ 위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.
  - ④ 위원장은 위 각 항에 따라 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18조(심의위원회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된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## 제3절 다양성위원회

- 제19조(다양성위원회 설치) 총장은 교내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성 위원회를 둔다.
- 제20조(다양성위원회 구성) ① 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부센터장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기획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- ③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교원의 직급 비율을

- 고려하고, 직원 및 학생 위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1조(다양성위원회 기능) 다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교내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정책 제안
  - 2. 교내 다양성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홍보
- 제22조(다양성위원회 회의) 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4장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제1절 신고 및 조사

- 제23조(신고)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, 신고 일시 및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·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④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 관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의 신고는 성희롱·성폭력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, 기타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- 제24조(신고의 각하)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.
  - 1. 신고인이 제2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 - 2. 제23조 제5항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
  - 3.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

- 4.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
- 5.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
- 6. 신고된 내용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
- 7. 그 밖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
-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임시조치)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,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피해자, 신고인,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접촉, 명예훼손, 불이익, 차별 및 그밖의 인권침해에 준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
  - 2.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, 사무실, 연구실,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, 격리 등의 공간부리 조치
  - 3. 피해자, 신고인, 대리인 및 참고인 등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
  - 4.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센터장은 이를 사유로 징계담당부서에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원 사건의 징계를 요청할 때 징계 가중 참착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26조(사건의 조사와 처리)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
  - ② 센터장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,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  -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④ 신고 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,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

- 리하여야 한다.
- ⑤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일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- 제27조(조사의 방법)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,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  - 1.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,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
  - 2.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
  -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, 인권침해 등 해당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, 참고인 및 그 밖에 사건 관련자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,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.
- 제28조(신고의 기각) ① 센터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.
  - 1.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
  - 2.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 - 3. 기타 별도의 구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중재 및 위원회 회부) ① 신고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. 다만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.
  - ② 중재할 경우, 센터장은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,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·감독한다.
  - ③ 센터장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.
  - ④ 센터장는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. 다만,

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제30조(조치 및 징계 요청) ①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재발 방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
  - 2.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
  - 3. 그 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  -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.
  - ③ 위원장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,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, 사직 또는 휴직 등 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  - ④ 가해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하여 징계 요청한다.
  - 1.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
  - 2. 피해자나 그 대리인, 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유·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
  - 3. 피해자나 그 대리인, 신고인 및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원을 노출한 경우
  - 4. 재범인 경우
  - 5. 피해자나 그 대리인, 신고인 및 참고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종용하거나, 특정한 진술의 요구 또는 협박·회유 등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려는 행위를 한 경우
- 제31조(재심의) ① 사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.
- ② 재심의 신청은 각 당사자 당 1회에 한정하며,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- 제32조(당사자의 권리) ①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
  - ②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,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.
- 제33조(재발방지조치) 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・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
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특별 예방교육,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제2절 피해자 보호

- 제34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・처리과 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.
  -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  - ④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
  - 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35조(불이익 금지)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강, 학점, 졸업, 승진,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학습권이나 근로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### 제5장 그 밖의 사항

- 제3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학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.
- 제38조(관계부서의 협력 의무)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.

## 부칙(제499호, 2019. 10. 31.)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.
- 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희롱

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칙(제531호, 2020. 4. 2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47호, 2021. 10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